이슈 브리프

다문화적 권리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증진 방안

최 현 | 제주대학교 교수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

설 대 우 | 경원대학교 교수

드라마를 통한 여성정책 발견 :
"엄마가 뿔났다"의 가사노동 가치 찾기

이 수 연 | 본원 연구위원

해외 입양: 미혼모자 복지 체계 형성의 걸림돌

김 도 현 | 뿌리의 집 원장

미국의 차기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여성정책

편 집 부

다문화적 권리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증진 방안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nuni85@naver.com)

머리말

한국(South Korea)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객관적 요인이 이러한 빠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주요 요인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다. 따라서 지구화가 국제 경쟁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지속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한, 외국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2007년 장기거주 외국인은 724,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 불과하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법무부 2007).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 인종적 단일성 내지 동질성을 전제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적 및 시민권 제도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문화적 ·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권리 원리와 제도를 도입하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가치관과 권리 의식을 진작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국인이 지구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실제적으로 지구화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글은 다문화적 권리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문화적 시민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권과 시민권의 역사 속에서 다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일부로서의 다문화적 권리의 보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다문화적 권리를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의 역사적 산물로 보는 것은 다문화적 권리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다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필요한 다문화적 권리의 내용과 그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1) 인권(Human Right)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법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 아니라 자연(이는 절대자 또는 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에 의해 규정되며, 보편적으로(다시 말해 동일한 모든 대상과 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다. 이로부터 근대 계몽주의

자들은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이고 이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right)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런 점에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이다. 자연법은 라틴어로 jus naturale였는데, 여기서 자연법(natural law)과 구분되는 자연권(natural right)라는 개념이 근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분리되었다. 서양의 인권 개념은 이처럼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인간이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전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어떤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이봉철, 2001; 조효제, 2007).

2) 시민권(Citizen Right)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은 국가라는 정치적 기구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몽사상가들은 천부인권설(또는 자연권설)에서 권리의 주체인 근대적 인간의 기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연이든 하늘이든 신이든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근대 국가였다. 따라서 현실 역사 속에서 인권은 시민권(citizen right)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탄생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국회가 1789년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인데 여기서 인권(the Rights of Man)은 시민권(the Rights of Citizen)과 동일시되고 있다(Morange, 1999).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에 따라 근대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시작했지만, 근대 국가가 실현한 인권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우선 계몽주의자들이 제시한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근대 국가는 자국의 시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인권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들과 여성은 그 시민권에서 조차 배제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여성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과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1)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는 영국을 선두로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이 국민국가 체제에 편입되었다.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신대륙으로 팽창해 가자 국민국가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1919년 성립된 베르사유 체제는 국민국가를 세계질서의 기본 단위로 승인했다. 따라서 근대적 세계에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은 우선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했다. 특정한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지 못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거나 자신을 시민으로 보호해 줄 국가를 건설해야만 했다. 따라서 1차 대전 이후 자신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 식민지·반식지의 주민들 사이에 민족주의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를 형성한다는 민족주의는 터무니없는 이념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이 될 수 있었다.

2) 국민적 시민권 제도와 국민적 정체성 형성

근대 국가의 성원은 권리의 주체로서 국민(national) 또는 시민(citizen)으로 불린다. 이와 달리 봉건적 국가와 절대 왕정 국가 같은 전근대적 국가의 성원은 통치의 대상이나 국왕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백성 또는 신민(subject)이라고 불린다. 신민은 국가에 대해서 조·용·조(租·庸·調) 등의 의무는 가지지만 권리는 없는 존재였다. 근대 국가를 통해 통치 대상에 지나지 않던 신민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요소가 바로 시민권 제도다. 근대 국가는 시민권 제도를 통해 국민의 경계를 확정하고, 조세제도와 모병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 곧 모든 국민에게 안전과 기본권, 참정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과 국민 정체성을 형성했다. 평등한 시민권과 문화적 동질성은 국민들이 동료 시민들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게 했으며, 국가 공동체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진 국민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 시민권 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국민이라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y)하게 만든 결정적 조건이었다. 따라서 시민권 제도가 국민 정체성과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3)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발전

마셜(Marshall, 1964)은 사회적 소수자의 투쟁이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그는 특히 노동자계급이 영국에서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셜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시민권 제도의 발전 과정은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8세기 영국에서 시민권은 자유권적 기본권(civil rights)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세기에 시민권은 정치권(political rights)을 포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시민권은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시민권이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시민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했다. 즉, 19세기까지 시민권 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한정되어 있었으나, 20세기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권 제도는 경쟁으로 생겨난 경제적 · 계급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 19세기까지 시민권 제도가 개인주의, 보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맹신하고 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 현실적 요구 때문에 계급이라는 시민들의 경제적 소속 집단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보편주의에서 벗어난 시민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인정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었으며, 노동권과 최저생활보장권 등이 시민권에 포함되었다.

다문화적 권리 개념의 발전

1) 다문화적 권리의 전제로서의 집단인지적(group-differentiated) 시민권

다문화적 권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을 뛰어넘어 집단인지적 권리라는 개념이 발전한 것이었다. 집단인지적 권리 개념이 탄생하는 데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노동자계급에 이어 페미니스트들이 자유주의적 시민권 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민권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시민권이 현실과 유리된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에서 시민권은 보편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약적인 관계, 시장에서의 교환, 그리고 개인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권은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장에서 교환할 것이 없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권리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은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 제도는 여성을 실제적으로는 무권리 상태에 버려두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는 남성들과는 달리 모성, 양육, 섹슈얼리티, 자기 몸의 통제할 권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은 보편성의 이

름으로 여성의 정신적 · 문화적 · 신체적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불이익을 강요했던 것이다. 영(Young, 1998) 같은 페미니스트들 이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인지적 시민권이 더욱 공정한 시민권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2) 다문화적 권리의 발전

최근에 지구화가 가속되고 다문화 사회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소수자의 다문화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발전시킨 집단인지적 권리의 개념은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집단인지적 권리는 집단들은 노동자계급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완전한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배제되는 집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집단인지적 권리 중에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권리를 다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3) 다문화적 권리의 주요 내용

킴리카는 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문화적 권리는 소수 종족을 보호하는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1) 자치권(self-government rights), (2) 다종족권(multiethnic rights)과 (3) 집단 대표권(special representationlf-governing rights)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자치권은 소수 종족이 스스로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적 관할권 또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다. 다종족권은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차별이나 불이익의 위험 없이 자신들의 신체적 · 문화적 특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다. 집단 대표권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소수 종족이 자신의 대표를 참여시킬 권리이다. 집단대표권은 주로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했던 집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차별보상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차별보상권은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과거 또는 현재에 소수 종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소수자 집단에게 일정한 특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소수 종족에게 국회 의석의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나 소수 종족의 성원들에게 대학 입학과 공무원 취업 문턱을 낮춰주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차별보상권과 관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Kymlicka, 1995: 27-32)

결론: 한국에서의 다문화적 권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에 자치권 등은 아직까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적 소수자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종족적 권리와 집단대표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대표권이다. 왜냐하면 집단대표권이 실현돼야 수요자 중심에서 다문화적 권리와 차별보상권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단대표권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석 중 일부를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귀화자와 영주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먼저 생겨나야만 한다. 따라서 먼저 귀화자와 영주권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대표권과 그에 따른 차별보상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인지적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윤인진과 김상학의 연구(200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장애인을 제외한 집단에게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같은 집단인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권리 개념에 따라 집단인지적 권리를 일종의 역차별로 보는 가치관과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집단인지적 권리를 수용하는 태도 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화자나 영주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힘을 모아 집단인지적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의석 중 일부를 다양한 소수집단에게 할애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법무부. 2007.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현황 발표", 서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 윤인진 · 김상학. 2003.「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222-248.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Garden City, N.Y.: Doubleday.
- Morange, Jean. 1999.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변해철 역. 서울: 탐구
- Young, Iris Marion. 1998.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Pp. 263-290 in The citizenship debates: a reader, edited by G. Shafi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

설 대 우 경원대학교 교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사회일반의 관심이 드높다. 이것은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란 제목으로 자가 연봉계산 컴퓨터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촉발된 것인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관심이 특히 큰 시점인 한가위 직전에 이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한동안 높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업주부란, 말 그대로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사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를 말한다. 사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남성전업주부란 말도 있으니 전업주부가 꼭 여성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업주부라고 하면 여전히 여성전업주부를 주로 일컫는 말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가정 내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자녀양육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만한 가정, 안정된 가정이 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안정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에 진입해 있는데, 이전에 비해 가족문화가 핵가족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통문화의 속성상 이런 상황에서 전업주부가 가지는 가정 내 역할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역할들은 사실 예전부터 전업주부의 몫이었지만, 전업주부의 전통적 역할이 가족문화 자체의 개인화 탓에 축소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가정 내에서 전업주부의 실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만족할만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 한 예가 바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라는 제법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전업주부들은 이런 시도에 대해 매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 공론화는 전반적으로 아직 멀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전업주부는 그 역할과 위상에 비해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심각한 약자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전업주부는 과도한 노동강도 및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 하긴,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앞서나간 발상인지도 모른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즉 무보수의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그 노동가치가 무시되거나 공식적인 통계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여성계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국민총생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전업주부가 행하는 노동가치의 실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전혀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평가방식은 몇 가지가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 폭넓게 적용되는 단일 기준은 없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경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적용할 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가 있다. '대체비용법'은 각 가사노동의 내용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업종사자의 급료나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는 대체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어느 수준의 대체직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계산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자녀의 방과 후 학업활동을 돕는다고 할 때, 이 활동을 전문 학원강사 수준에 맞출 경우 전업주부가 제공하는 가사노동가치는 매우 전문적 분야가 되어 예상보다 그 노동가치가 크게 계산된다. 이럴 경우, 과연 전업주부가 제공하는 가사노동이 그런 수준에 있는 지는 논란거리가 된다. '기회비용법'은 무보수 가사노동을 포기하고 직업노동에 참여할 경우 기대되는 잠재소득으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요구임금법'은 전업주부로 하여금 전업주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토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 또는 취업주부에게 노동시장에 계속 남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들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단일 방식은 없다. 그것은 전업주부의 가정 내 활동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산정에 대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시도했던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최근 사회일반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인정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한 적이 국내외에 있었다. 국내에서는 2006년도에 'CJ홈쇼핑'에서 주부 약 15,0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회비용

법을 적용한 연봉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40대가 가장 높은 3,407만원, 30대가 3,350만원, 50대가 2,678만원, 20대가 2,173만원으로 평가되었다. 국외사례로는 2007년도에 미국 salary.com에서 주부 약 40,0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연봉이 약 1억2천9백만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대체비용법, 특히 대체직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대체하여 계산한 방식인 탓에 일반적 기대치보다 그 계산치가 훨씬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도했던 전업주부 연봉계산 프로그램도 'CJ홈쇼핑'과 유사하게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것인데, 각종 통계적 자료를 인용하여 계산된 기준 임금률이 시간당 약 10,000원 정도였고 평균 전업주부의 한 달 가사노동시간(2004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참조)에 따른 평균 임금이 164만원에 달했다.

이들 사례 외에 국회차원(한나라당 이계경 전의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2005년 4월)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는 조사방법에 따라 연봉 1,030~1,3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삼성증권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연봉이 2,100~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7년 5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인정은 전업주부에게 있어 사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은 이혼 등에 있어 재산분할의 문제나 전업주부의 사고 또는 사망 시에 적절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실제 2005년 이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업주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는 일용직 노동자에 준해 일당 50,000원의 피해보상액이 산정되었다(이 경우 월 110만원, 연봉 1,320만원 수준). 그러다가 2005년에 서울남부지부 김정렬 판사의 판결에 따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숙련도 높은 특수인부의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당 65,000원으로 산정되기에 이른다(이 경우 월 143만원, 연봉 1,716만원 수준). 사실 김 판사의 판결이 매우 전향적이긴 하지만, 전업주부 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 준해 22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전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이 22일로 한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평가에 대한 재론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혼 등에 있어 재산분할 문제도 전업주부가 행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취업주부와 달리 전업주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업주부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꾸려가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될 경우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업주부가 행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고 충분히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회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잠재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시도한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는 사회적

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담론의 장이 되었다고 본다. 듣기로는 본 행사가 시작되자 언론에서 먼저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이어 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연봉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나름대로 각자의 연봉을 계산해 보았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실제적 변화를 이루어 낸 것은 아니지만, 사회일반에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작으나마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

바라기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이 기회에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고 각각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모델을 확립하는 데 까지 갔으면 한다. 또한 매년 특정 시점에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사회에 충분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관련연구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폭을 넓힐 것이다. 특히, 특정 시점에 발표하게 되는 관련 연구결과는 이 분야에 있어 여성정책연구원의 위상을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따라서 이들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도 현저히 제고할 것이다.

사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산정과 인정에 대한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에 있어 학문적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며 그 정책으로 민간 부문까지를 아우른다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또한, 우리 문화가 가진 여러 가지 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여성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그 변화를 적절히 수용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 볼 수 있다. 그 첫 발자국을 잘 내려디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는 매우 주의 깊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모쪼록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전업주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드라마를 통한 여성정책 발견 : “엄마가 뿔났다”의 가사노동 가치 찾기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드라마의 문제 제기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가 오랜만에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드라마가 끝난 현재까지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 드라마의 소구력은 김수현 작가의 강점인 사사로운 일상의 미화라든가 스트레스 해소용 대사, 그리고 입체적이고 기발한 인물 등에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 엄마의 가출이라는 다소 ‘센세이셔날’한 사건을 설정한 것이 장안에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출하는 엄마로 설정되는 한자(김혜자 분)는 크게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한 집이 있고 세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며 화목한 가족, 특히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웬만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대해 그녀의 자녀들, 남편, 그리고 친구처럼 지내는 신우까지 모두 이해불가를 외친다. 물론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근데, 왜 김혜자가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전체적 수준에서 볼 때 한자 정도의 세속적 성공을 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 인생의 성공의 척도로 간주되는 우리 사회에서 큰 딸은 잘나가는 변호사요, 둘째 딸은 나름대로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하고 더구나 준재벌 정도의 재력가에 시집을 갔으니 웬만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더 중요한 성공 척도가 되는 아들은 고졸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대신 엉겁결에 맞이하기는 했으나 야무지고 심성도 고운 며느리가 요새 젊은이답지 않게 시부모 공손히 공양하니 이 또한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와 권력의 기준을 떠난다면 더 실속이 있다. 깔끔하면서도 이해심 있는 시아버지는 평생 그녀의 지원자이며 동갑내기 신우는 자칫 심술스러울 수도 있건만 온갖 속내 얘기 털어놓고 사는 고향친구 같은 존재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인 남편도 돈 하나 많이 못 번 것 빼고는 다정하고 성실한 평생의 반려자이다. 물론 시청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한자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자 결혼생활연수의 반 정도

라도 결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한" 여주인공이 가출을 감행함으로써 세간에는 한동안 찬반 양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약간의 의외의 설정은 이 드라마 시청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찬성 쪽에서는 그 동안 인기작가로만 간주되었던 김수현의 좀 더 진지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작가의 이러한 문제제기 방식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성역할로서의 가사노동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한자의 가출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즉, 한자의 인생이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한자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자 자신의 인생보다는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실 대단히 보편적이다. 더구나 젊은 세대도 아니고 한자처럼 60에 들어선 전업주부가 자녀문제나 가족문제 외에 무엇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드라마들은 이러한 전제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중노년의 여성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자녀의 학업, 취업, 그리고 결혼에 목을 매고 살아간다. 이들은 자녀들의 이러한 생애사건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자녀들과 충돌하는 계기를 만들거나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을 초월할 수 있는 기혼여성들은 드라마에서 발견하기가 힘든데 만약 있다면 또 다른 극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즉, 〈조강지처클럽〉에 나오는 지란(김희정 분)처럼 사랑을 위해 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나오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비춰지고 이 인물은 이러한 행동 때문에 주변에 의해 비난받고 사회에서 처벌받는 것으로 설정된다.

〈엄마가 뿔났다〉의 신선함은 중년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한자는 대체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다. 그녀는 남들처럼 열심히 살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한다. 삼시세끼 반찬걱정 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살림이라면 지겨워 고개를 젓는 정도도 아니다. 시부모가 끼니에 맞춰 외출을 하면 홀가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부모 봉양에 사보타지를 해본 적도 없다. 변호사로 바쁜 큰 딸을 위해 반찬을 날라다 주고 빈 집을 청소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식의 고난에 마음조리고 성공에 기뻐하며 사는 것도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 한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고 느끼면서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자아추구의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으로서 '한자'로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는 이혼을 하겠다거나 호적을 파겠다는 정도의 과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가져보겠다는 꿈이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않고 읽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배우고 싶은 서예도 배우겠다는 것이다. 책 보느라 밤잠을 설친 다음 날은 실컷 낮잠도 자보고 가끔은 한적하게 메니큐어도 칠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밥을 차리지 않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거나 라면으로 때우기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성역할의 굴레

한국 여성에게 있어 성역할의 굴레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 여성들은 언제나 성역할을 통해서 규정된다. 한국 여성이 전문적 분야에서 아무리 높은 업적을 쌓아도 누구의 아내거나 어머니이가 아니면 그녀의 인생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성적인 영역으로 규정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성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인의 자질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직업적, 전문적 역할이 없는 여성의 경우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물론 남성에게도 성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남성의 성역할은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고 따라서 남성의 성역할은 좀 더 독립적인 존재를 허용한다. 반면에 여성의 성역할은 사회적 역할과 대립되면서 여성을 가정과 가족에 종속된 존재로 설정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가사노동이 성역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사노동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편인 것이다. 그래서 가사노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 연류되는 것이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식과 남편을 돌보는 행동이 가사노동이기 때문에 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다(혹은 비롯되어야 한다고 규정된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가사노동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잘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성역할에 충실한 것이며 결국 여성이 가장 인간스러울 수 있기 위한 전제이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다. 〈엄마가 뿔났다〉에서도 한자는 자신의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시아버지의 식성에 따라 매끼 다른 반찬을 올리고 싶고 여름이면 손이 많이 가면 모시옷

을 손질해서 입혀드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항시적이고 특별한 보상도 없는 의무에 대해 시지프스의 바위 같은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 가사노동은 가전제품이나 가사도움 서비스가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힘겨운 숙제이다. 그래서 〈엄마가 뿔났다〉에서 한자의 가출은 이 드라마의 가장 여성주의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드라마가 제시하는 해결방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현실에 반영해야 할까? 우선 드라마 안에도 몇 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통한 가사노동 부담의 완화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남성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 이 드라마에서 한자의 남편인 일석은 철도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였다. 그는 아들의 세탁소를 틈틈이 돕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삶을 무료하게 살고 있는 편이다. 집안의 대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자에 비해 일석은 약간의 소외감까지 느낀다.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에서 어느 정도 유리된 일석은 점점 아내와의 관계에 매달리게 된다. 가족관계 외에도 자신의 생활을 찾고 싶어 하는 한자와는 반대의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자가 집을 나가고 나자 스스로 옷도 제대로 못 찾아 입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남성은 기초적인 생활 업무의 방법도 몰라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집안일에서 유리되는 것은 노후에 자족적인 삶의 기회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부부가 가사를 나누는 것은 여성평등 뿐만 아니라 남성평등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관련 이 드라마에서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노인부양이다. 노인부양은 어른들에게 세끼 식사와 깨끗한 옷을 제공하는 것 외에 감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인부양은 감정적 노동을 요구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감정적 돌봄의 주 공급자가 된다. 그런데 며느리나 딸, 아들의 이러한 지원이 노인들에게는 최상의 카드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노인들에게는 노인들 나름의 관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성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사회가 이성 문제에 있어 점진적으로 (때로는 과격하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른 노인들의 이성교제에는 관대할 수 있어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도 미국에서 날아 온 둘째 아들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하지만 한자의 시아버지는 노년에 찾아온 로맨스에 젊은 시절에도 느끼지 못한 들뜬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묘사는 로맨스

가 젊은이들에게만 어울리는 감정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한자의 시아버지가 연애를 시작하자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더 행복하고 한자는 한자대로 여유를 가지게 된다. 노년의 성욕은 단지 육체적인 집착이 아닌 감정의 순리적 배출이며 우리 사회 전체가 열린 마음으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해결방안은 주부에 대한 안식년이다. 물론 드라마에서도 임신한 며느리의 건강악화 등 가정 내의 사건들로 인해 안식년이 아니라 몇 달의 안식월로 끝나고 만다. 하지만 이의 시사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실의, 보통의 가정에서 주부들이 일년 아니라 한 달이라도 집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주부들이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족들과 사회가 인정해줄 필요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주한 가사노동 틈틈이 주부들이 집 안에서나 혹은 밖에서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주부 자신의 웰빙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정 전체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이처럼 이 드라마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관련 사람들의 몇 가지 중요한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이슈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먼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은 남녀 모두가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지원 방안을 총괄해서 일컫는다. 그런데 현재의 성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남성에게는 가정 생활의, 여성에게는 직장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가정양립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에서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그리고 "사회합의에 기반한 고용인프라 확충"이라는 5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가 남성의 가사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휴일 · 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선택적 ·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성들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한다든가, 육아나 출산, 그리고 다른 가족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일을 시작

하고 마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거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말한다. 사실 가족부양이라는 성역할을 담당하는 남성들에게 직장의 요구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정친화적 정책을 실용화하지 않는 한 남성들이 가정 생활과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 줌으로써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경제적 실리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방법은 여성의 연금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여성들의 가입률이 낮은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납입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다. 더구나 이혼율의 증가는 배우자의 연금권을 공유하거나 남편의 사망 시 유족연금 같은 파생연금 수급권에 대한 가능성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금체제는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자녀 육아, 노인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평생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초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노인이 되었을 때 가난의 위험에 노출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노년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국민연금에 출산 크레딧 도입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료로 환산), 그리고 이혼 시에도 여성이 배우자의 연금을 계속 분할 받을 수 있게 정책 등을 추진해볼 만하다.

우리의 많은 제도들은 아직 성별 경험이나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여성 고유의 경험이나 환경을 고려한 것들이다. "엄마가 뿔났다"는 여성의 시각과 남성적 시각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이 드라마가 일으킨 반향을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극적인 향상을 보여줄 때이다.

해외 입양: 미혼모자 복지 체계 형성의 걸림돌

–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 –

김도현 목사 뿌리의 집[1] 원장

들어가는 말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아동의 국제 입양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이 국제 입양은 실상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서구 세계에로의 아동의 일방적 이동이다.[2] 이 국제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라는 일견 매우 합당하고 도덕성이 풍부해 보이는 주창 하에 실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슬로건(slogan)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면일 뿐 진실은 아니다. 국제 입양은 모더니즘과 휴머니즘으로 무장된 서구 사회의 욕망과 가난한 나라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열한 의지의 공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국제 입양은 아동 공급 국가의 가족해체에 기초해서 아동 수요 국가의 가족형성을 돕는 가혹한 근대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 입양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풍부하게 아동을 공급해온 공급 국가로서 영욕을 함께 누려온 나라이다. 서구의 도덕성 풍부한 가족형성 기회의 제공자로서의 서구 사회로부터 얻어 온 영예(?)와, 가족해체의 위기와 시련에 처한 자국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덕성 높은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기해온 가혹한 나라로서의 치욕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진입하고 있는 대명천지에 6·25가 야기한 가난과 가족해체를 운위하는 것을 통해서 해외입양의 불가피성을 앵무새처럼 농단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입양의 출발점이랄 수 있는 '가족해체'가 없는 사회, 그래서 입양 보내져야 할 아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입양'의 덕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선전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상기한 이해에 기초해서, 본고는 1) 국제 입양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2) 국내의 해외 입양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미혼모자 복지체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1) 뿌리의 집(KoRoot)은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해외입양인 쉼터 '뿌리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쉼터 사업과 함께 해외입양인 재정착 프로그램, 해외입양 관련 도서출판 및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서구 탈식민주의 권력과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치체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족해체, 혹은 미혼모로부터의 아동의 격리가 해외입양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해외입양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2)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흑인 아동들을 캐나다나 영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있다.

하고 있는지, 3)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에 기초해서 미혼모자 복지체계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서 아동의 가족 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점과 우리 사회가 해외 입양이든 국내 입양이든 더 이상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국제 입양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라는 슬로건 뒤에 감추어진 진실 –

1) 서구 사회의 욕망

국제 입양에 모더니즘과 휴머니즘으로 무장된 서구 사회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은 일견 매우 가혹하게 보인다. 그러나 서구의 입양 산업은, 비서구세계(!)의 아동일 경우에만, '어떤 아동이든지 아동은 가족 내부에서 혹은 자기가 출현한 사회의 내부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는 자명한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국제 입양 산업은 사업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아동이 출현한 가족과 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자국 내의 '입양을 욕망하는 가족들' 의 욕구를 외면함과 함께 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물적 토대의 상실에 직면해야 한다.

서구의 국제 입양 산업은 '입양을 욕망하는 가족들' 의 물적 토대 위에서 구축된 산업이다. 사람은 가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내어 놓는다. 그렇다면 '입양을 욕망하는 가족들' 을 어떤 가치들을 구매하는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서구적 휴머니즘의 실천, 다문화주의의 욕망, 서구 여성주의의 욕망 들이 그것이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 불임의 상황이 입양을 고려하는 가장 대중적인 출발점이다. 불임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볼 때, 상실(loss)의 경험이며, 사람들은 이 상실을 회복하여 정상 가족에 진입하고자 한다. 불임의 가정이 겪는 사회적 소외는 따뜻하게 이해되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입양부모의 욕망이 입양아동의 필요보다 우선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빈도로 숨어있다. 동시에 이 일은 한 가족이 해체를 통하여 비정상화되는 일에 기초해서 정상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이 간과되기 쉽다.

–*서구적 휴머니즘의 실천* : 서구 가정들 중에는 친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된 삶의 방식의 하나로서 가난한 나라의 아동을 입양한다. 후진성과 미개발에 처한 비서구

세계의 아동들을 입양해서 건강권과 교육권과 문명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일은 인류애에 기초한 높은 덕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서구 세계의 구원자 환상(saviour fantasy)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며[3] 더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서구로 입양될수록 지구촌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

-다문화주의의 욕망 : 유럽의 근대는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서 다문화주의가 출현했고, 각성된 다문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각성의 표지로서 비서구 세계의 아동들을 입양했다.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이 진정한 연대를 표명해야할 지구촌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가정들이 지닌 해체되지 않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는 열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서구 여성주의의 욕망 :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이고 싶어 했다. 이들 중의 일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서는 자기가 입양한 아이의 생모가 자신이 연대하고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2) 한국 사회의 공모

국제 입양은 가난한 나라들의 공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사회의 내부적 가치의 실현과 경제 문제의 해결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적실한 도구로서 해외 입양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여 미국과 유럽의 국제 입양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응답해왔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혼혈 아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장애 아동, 기아, 고아, 빈곤 가정과 결손 가정의 아동, 미혼모의 아동에로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의 해외 격출의 배후에는 단일혈통 민족주의, 정상인 이데올로기, 가부장제와 같은 가치 체계가 숨어있다. 해외 입양은 그것이 단일민족주의(혹은 순혈주의)이든 정상인 이데올로기이든 가부장제적 남성우월주의이든 간에, 우리 사회 내부로 출현한 소위 '부정한(impure) 아동'을 우리 사회 외부로 격출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를 단속하고 정화(purification)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 실현의 결과물이다.[4] 이와 같은 가체 체계가 결국은 국제 입양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3) Tobias Huebinette,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2005)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p. 28 / 참고로 이 책은 한국의 지문당에서 같은 제목의 영문본으로 출판되었으며, 2008년 뿌리의 집이 번역하여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라는 제목으로 소나무출판사를 통해 출판했다.

4) Tobisas Huebinette, 상게서, p.77

공모할 수 있었던 정신적 토대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55년간 약 17만에 이르는 아동을 해외 입양 보내는 일을 통해서 이 아동들의 성장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을 스스로 면제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달러화의 유입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8년에 아동 하나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로 해서 유입된 달러가 5000 달러 정도인 것은 당시의 미국 뉴욕에서 발간된 The Progressive의 기자 로트쉴트(Matthew Rothschield)에 의해서 보도된 바가 있다.[5] 복지부의 통계는 1988년에 6,463명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유입된 달러화는 어림잡아 3천만 달러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천만 달러는 1988년 1월 외환보유고의 약 0.6%에 해당한다.[6]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결코 무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아동의 해외 격출을 통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지출해야 할 사회 복지 비용의 지출을 스스로 면제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 추구에 있어서 유의미성을 지니는 달러화의 유입을 창출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해외 입양 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모더니즘과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서구 사회의 욕망과 한국 사회의 성찰 결핍의 절묘한 만남과 공모는 한국 사회 내부에 해외 입양 산업의 융성을 가져 왔다. 오늘날에 이르러 정부 공인 4개 해외 입양 기관은 해외 입양 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내 입양 사업은 물론 미혼모 생활 시설의 운영에까지 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소위 왕성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입양이 국제적으로 혹은 한국 사회 내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비난에 직면하여 그 해답으로서 국내 입양 증진의 필요성이 다차원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이 기관들은 국내 입양의 선두주자로 나섰고 현재 국내 입양의 60% 이상을 시행하고 있다.[7] 그러나 왕성한 국내 입양 사업은 해외 입양 사업의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국내 입양 사업의 성과에 따라 해외 입양 사업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국내 입양은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이 기관들은 사회 복지 시스템의 현저한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가난한 가정으로부터의 아동의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국내 입양에 일정한 수의 아동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자 해외 입양 가능 아동의 획득에 전력을 쏟게 된다. 이에 미혼모가 입양 가능 아동 획득의 주요 대상이 되자, 최근 해외 입양 기관은 미혼모 생활시설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8]

5) Matthew Rothschield. 1988.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The Progressive 52(1), pp.18-23.
6) 한국은행 통계
7)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회의시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총장의 발언

문제는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 그리고 미혼모자 보호는 그 본질과 철학에 있어서 전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한 대로, 해외 입양은 비록 휴머니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서구 사회의 욕망이 관철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해외 입양을 반대하고 그 해답을 국내 입양에서 찾고자 하는 일은 일견 정당해 보인다. 자기 사회 내부에로 출현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자기 사회 스스로 걸머져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자기가 출현한 가족 내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양육 받는 것이 입양 보내어지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합당한 관점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자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아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양육할 기회가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경우 미혼모자 복지 체계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동을 국내 입양 체계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입양 체계이든 해외 입양 체계이든 입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 가능 아동 획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혼모부자 복지 체계 내부로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입양의 철학과 논리와 자본이 개입해서 입양의 철학과 논리를 관철하는 길을 차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양은 가족 해체의 결과를 사회 복지적으로 해결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가족 해체를 유인하는 방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불행하게도 입양 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 시설에서는 임신한 미혼모가 출현했을 때, 출산 후 아동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미혼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족 형성 과정을 돕는 복지가 아니라 가족 해체를 유인하는 복지이며, 이는 미혼모자 생활 시설이 입양을 위한 아동 획득의 수단으로서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2007년 입양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애란원에 입소한 미혼모의 82%가 양육을 결심하는 데 반해 나머지 기관들의 양육 결심은 37%에 머무르고 있다.[9] 45%라고 하는 통계상의 이 엄청난 차이는 입양 기관이 운영하거나 입양 기관의 개입이 용이한 미혼모자 시설에서는 미혼모자 복지의 고유한 철학 즉 미혼모에게 출산 자녀와 함께 가족을 형성해나가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지원 혹은 충분한 입양 숙려 기간이 제공되는 대신, 미혼모와 출산 아동이 형성해갈 가족의 해체를 암암리에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준다.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에 있는 한상순의 토론문에 의하면 미혼모 보호 시설 30개소 중 17개소가 해외입양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에 나타난 이미정 박사의 논문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과 애란원 원장 한상순의 토론문 참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 입양(해외 입양) 산업으로 하여금 국내 입양 사업과 미혼모자 복지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결정적인 일이다. 철학과 목표와 가치가 상충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 주체가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외 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 사업과 미혼모자 복지 사업에 두루 뛰어 들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와 시민 사회가 충분하고도 진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자의 출현 단계에서부터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갖추어 놓고 가족 해체를 암암리에 유인 강제함으로 아동을 접수 혹은 획득(In Take)하고 있는 해외 입양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입양 사업과 국내 입양 사업과 미혼모자 복지 사업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국가 권력이 개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참여 정부 시절 비등한 해외 입양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답으로 국내 입양을 선택한 일에 대해서 정책적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해외 입양에 대한 답이 국내 입양에 있지 않고 미혼모자 복지 체계의 획기적 발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해외 입양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해답 중의 하나로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국내입양장려를 미혼모자 복지체계의 획기적 개선보다 우선적으로 펼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미혼모자 복지 체계에 두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지도와 감독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혼모자 복지 체계 안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미혼모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혼모자 가정'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붕괴와 해체의 위기에 처한 가족을 향한 복지의 강화를 통해 아동복지의 수요 그 자체를 줄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입양은 물론 국내 입양까지도 보낼 아동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미혼모자 복지의 단계에서 아동 복지의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국내 입양)이나 '피보다 진한 사랑'(국제 입양)에 우선하는 꿈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여성정책

편집 부

"우리는 여성을 고립시키는 제도들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일하는 여성의 40%는 유급간병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이나 승진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서, 이것은 제가 믿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용주들에게 일년에 7일의 유급간병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것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하는 가정에 필요한 변화입니다."

– 버락 오바마, 2007. 11. 7, 아이오와 베텐도프 연설 중 –

지난 11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후보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후보로서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이기도 한 오바마 당선자는 지금의 부시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1. 임금 불평등 해소 (Fight for Pay Equity)

현재 미국의 여성임금은 여전히 남성임금의 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격차는 인종별로 더욱 심각하여 흑인 여성의 연간 임금은 백인 남성의 62%이며, 히스패닉 여성의 경우는 53%에 불과하다. 한편, 남녀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약 319십억달러(한화 446조원)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어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오바마는 남녀 간의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공약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여성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 임금제 부활법(Fair Pay Restoration Act)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18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차별임금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오바마는 이를 개선하여 시간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유급 상병 · 간병휴가 (Paid Sick Leave)

현재 미국의 가족 · 의료 휴가법(Family Medical Leave Act) 규정에 따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78%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실제 휴가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생계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 근로 여성의 47%가 유급 상병 ·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7%의 저소득층 여성(전체 여성의 18%)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진료를 미루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가족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여겨지는 여성 근로자의 49%,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의 75%는 자녀가 아파서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손해를 무릅쓰고,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여성에게 유급 상병 · 간병휴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년에 7일의 유급 상병 · 간병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총 2천2백만 명의 여성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유급휴직제도 지원 (Encourage States to Adopt Paid Leave)

유급 상병 · 간병휴가 시행과 관련하여 오바마는 50개 주(州)에서 유급휴직제도 채택하도록 장려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각 주별로 유급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주에 15억 달러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육아휴직 실시에 따르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하고는 출산 · 육아 · 가족관련 휴가를 무급으로 법제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오바마의 정책은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낮은 미국이 일 · 가족 양립정책의 법제화와 실효성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급 육아휴직 제공을 통해 여성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공공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시장을 통해 민간 보육서비스를 높은 비용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 여성 근로자의 경우 특히 자녀를 출산 ·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미국 아동들이 부모없이 혼자 방치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20~25시간 정도이며, 이 시간 동안 자녀들은 범죄, 마약,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주중에 오후 3시~6

시는 10대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한 시간대로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이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의 범죄 · 폭력 예방 지출이 감소하면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되면서 연방정부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출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th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Program)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많은 재정이 지원된다면, 약 1백만명의 아동이 추가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지역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이 협력하는 새로운 여름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여름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게 할 방침이다.

5.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 (Expand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미국은 공공보육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일하는 부모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등 민간 시장을 통해 높은 비용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21.9%(2000년 기준)로 아동이 있는 근로빈곤층 가족의 생활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아동빈곤율(1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모자가족 아동빈곤율은 49.5%로 나타나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의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바마는 일하는 부모가 일 · 가족 양립을 꾀하면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 가족의 아동보육 비용을 아동 1인당 $3,000에 한해서 현행 35%에서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세제혜택보다 750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여성의 선택권 보호 (Protect Women's Right to Choose)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후보는 후기 낙태는 반대하지만,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예외사항은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는 주 상원의원으로 재직 시에도 일리노이주의 모든 여성들이 안전한 피임약과 도구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회에서 FDA 승인 피임약을 커버하는 보험설계를 주장한 바가 있다.

오바마는 소위 Roe v. Wade라 불리는 197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례, 즉 여성은 자유로운 낙태를 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보장을 명확히 한 이 판례는 여성의 몸에 얽혀있는 가족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당시 여권운동가와 진보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Roe v. Wade 판례는 그 후에도 도전과 이슈가 되어 판결이 내려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 선거와 대법관 임명 때마다 반복되는 핵심주제의 하나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후보였던 오바마는 Roe v. Wade 판례 3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Roe v. Wade 판례 수정안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전미낙태옹호연합회(NARAL)의 100%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 의도하지 않는 임신 감소 (Reduce Unintended Pregnancy)

오바마 당선자는 상원시절부터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상원의원 재직시 저소득층의 여성과 10대 혹은 학생신분 중인 여성들에게 임신조절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D-MO)과 다양한 민족과 인종집단의 의도하지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미하원의 Hilda Solis' 법안(D-CA)을 상원의 판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오바마 당선자는 2007년 1월 도입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와 피임, 건강정보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방우선법안(Prevention First Act)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그는 가족계획과 절제와 안전한 성관계방법 등을 가르치는 폭넓은 성교육사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할 예정이다. 원치 않는 임신가능성이 높은 10대와 저소득층 여성들의 임신조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하여 여성의 모성권 보호와 유아사망률을 낮출 예정이다.

8.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 (End Health Care Disparities)

미국 여성건강 정책은 단순한 성별과 건강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별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건강을 의미한다. 미국의 건강보험 및 병원 진료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의 여성건강을 돌보는 정책이 특별히 요구된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젠더와 건강 불균형에 관한 연구 투자으로 공약으로 제기하였다. 여성건강 연구가 좀 더 많이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임상실험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험 결과 오류를 줄여 유의미한 연구결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건강 돌봄을 위하여 지역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와 같은 몇 가지 지원방안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 강화 및 성별 건강형평성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9. 여성 폭력 근절 (End Violence Against Women)

미국에서 여성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노출될 위험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여성의 4명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미국 내 폭력 사건의 11%는 가정폭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간 1,400여명(하루에 4명꼴)의 미국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2천여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거나, 강간위협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여성 폭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여성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보고하는 정책 자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다.

이상 미국의 차기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여성정책 공약을 살펴보았다. 그가 재임할 향후 5년동안, 이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미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정책사례들을 남겨주기를 기대해 본다.